

[홍콩] 2019년 1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(통관/검역/라벨링*/수출현안)

□ 주요내용

○ 홍콩산 버터 쿠키 및 크랜베리 쿠키 제품, 라벨링 규정 위반

- 2019년 1월 11일, 홍콩 식품안전센터(CFS)는 카우룽 시티(Kowloon City)지역의 한 베이커리 샵에서 홍콩산 버터 쿠키 및 크랜베리 쿠키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발표
- 해당 제품의 순중량은 240g이며, 라벨상 나트륨(Sodium) 함유량이 100g당 75mg 으로 표기되었으나 홍콩 당국의 샘플 추출 조사 결과 100g당 160mg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짐
- 홍콩 공중보건 및 지방자치령(Cap 132) 제 61조에 따르면, 식품을 잘못 설명하거나 식품의 성질, 물질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라벨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
-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사실을 유통업체에 통보하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힘

⇒ 시사점 : 제품 영양성분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

*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(2019. 1. 11)

관련홈페이지 : www.cfs.gov.hk

□ 주요내용

○ 홍콩 식품안전센터, “수입산 채소 초이삼 샘플에서 농약 과다 검출”

- 2019년 1월 15일, 홍콩 식품안전센터(CFS)는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차원에서 초이삼(Choisum) 샘플을 수입단계에서 추출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. 검사 결과 4.87ppm(parts per million)의 아세트아미프리트(Acetamiprid)가 검출됨
- 아세트아미프리트는 저독성 살균제 농약으로, 해당 농약에 관한 당국의 최대 법적 허용치는 1.2ppm(parts per million)임
- 홍콩의 살균·살충제 잔류농약에 관한 식품 규정(Cap 132CM)을 따르지 않고 법적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을 수입하거나,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
-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일반 대중들에게 채소류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과일·야채를 깨끗이 행구고, 필요시 브러시로 살충제 및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
-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추가적인 샘플링 검사를 비롯하여 해당 식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밝힘

⇒ 시사점 : 홍콩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잘 준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

*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(2019. 1. 15)

관련홈페이지 : www.cfs.gov.hk

□ 성분목록(List of ingredients) 표기 및 주의사항

- 포장식품은 성분목록을 읽기 쉽게 표기 또는 라벨링 하되, 안내 서두에 ingredients(配料), composition(成分組合), contents(內含物質)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야 됨
- 식품 함유성분(식품전체 부피의 5%보다 적게 차지하는 물은 제외)은 식품 포장 당시 무게 또는 부피가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열거
- 식품 사용성분이 응집 또는 탈수형태거나, 식품 조제과정에서 재구성될 경우 성분 표기 순서는 응집 또는 탈수 이전의 무게 또는 부피 기록
- 식품이 아래 식품을 구성·함유할 경우 성분 표기 시 구체적인 성분 명칭 표시해야 함
 -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(밀, 호밀, 보리, 귀리 또는 산물)
 - 갑각류 및 그 산물
 - 계란류 및 그 산물
 - 어류 및 그 산물
 - 땅콩, 대두 및 그 산물
 - 우유 및 그 산물(락토스 포함)
 - 견과류 및 그 산물(식품에 아황산염이 최소 10ppm 이상 함유 될 시 아황산염의 기능 및 화학부류 명시)

□ 잔류농약 모니터링(Monitoring Pesticides Residues in Food)

- 관련법령 :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, Cap.132CM
 -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식품안전센터(CFS)는 홍콩의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마련,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
 - 2011년 CODEX 권장 표준을 바탕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수출하는 기타 주요국의 기준을 추가·보충해 총 584개 농식품 가운데 농약 360종류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7,083개 항목 마련 (78개의 제외대상 농약류 별도 규정)
- 홍콩은 통관 단계 이외에도 필요시 유통 중에도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 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
- 홍콩 식품안전센터 웹사이트에서 잔류농약 허용치 관련 규정 및 기준치 검색이 가능

• 잔류농약 관련 법령(Chapter 133)

http://www.cfs.gov.hk/tc_chi/whatsnew/whatsnew_fstr/whatsnew_fstr_21_Pesticide.html

• 잔류농약 허용기준 가이드라인

http://www.cfs.gov.hk/tc_chi/food_leg/food_leg.html

• 잔류농약 허용치 기준 검색

http://www.cfs.gov.hk/english/mrl/mrl_preinput.php

-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이 인체에 위험하지 않거나 무해할 경우 수입·판매가 가능하며 유해성 여부는 식품환경위생부의 위해성 평가로 결정
 - 위해성이 판단된 식품의 경우 시장 판매가 불가하며, 리콜조치 실시 및 관련 수입상에 5만 달러(HKD)의 벌금형 및 6개월 구금형 부과

- 해당사항 없음